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3선거구 정재웅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박상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개정되면서 현행 2천 제곱미터였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기준이 1천 제곱미터로 완화됨에 따라 변화된 기준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역세권에 건설되는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